

[논 문]

## 전자상거래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의 활용과 법적 과제\*

홍진희\*\*

### 《차 례》

- |                                 |   |
|---------------------------------|---|
| <b>I.</b> 들어가며                  | <b>III.</b> 전자상거래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보험 |
| <b>II.</b> 전자상거래상 손해배상책임        | <b>1.</b> 서설                            |
| <b>1.</b>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의의와 유형     | <b>2.</b> 전자상거래보험의 법적 성격                |
| <b>2.</b>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 <b>3.</b> 전자상거래보험의 보상요건                 |
| <b>3.</b>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특징 | <b>4.</b> 전자상거래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           |
| <b>4.</b> 전통적인 책임보험에 의한 담보 가능성  | <b>5.</b> 각 전자상거래보험별 특성 및 활용현황          |
|                                 | <b>IV.</b> 맺음말                          |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C-B00435]

\*\* 충북대학교 법학부 강사, 법학박사

## I. 들어가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혁신과 컴퓨터사용의 보편화에 따라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sup>1)</sup>가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이 제공하는 사이버공간은 전자상거래 사업자<sup>2)</sup>에 대하여 무한한 잠재시장 및 성장가능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효율적인 사업수단을 제공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침해,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전자금융사고로 인한 재산권침해 등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책임위험은 매우 커졌다.<sup>3)</sup>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전자상거래의 상대방, 이용자 또는 제3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민법상 책임 외에도 전자상거래 특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책임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상품들(이하에서는 “전자상거래보험”이라고 한다.)이 판매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전자상거래(쇼핑몰)보증보험(이하에서는 “쇼핑몰보증보험”이라고 한다.),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 공인전자문서센터배상책임보험, 공인인증기관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sup>4)</sup> 그러나 전자상거래보험은 각 보험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사고,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이 다르다. 즉, 전자상거래 보험들은 통일되어 있지 않고, 보험자마다 전자상거래보험의 내용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보험 약관들은 아직 법원에 의해서 평가가 되지 않고 있어,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의 책임위험에 대한 전자상거래보험의 담

1) 전자상거래의 개념은 여전히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현행 법률상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5호).

2) 이하 II. 1.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의의와 유형 참조.

3)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곽영암, “전자상거래 관련 보험 활성화 방안”, 전자상거래학회지, 제8권 제2호, 2007, 35-36면 참조.

4) 이 외에도 e-biz@배상책임보험, Net-secure 종합보험 및 네트워크사업자종합보험 등이 출시되고 있다(곽영암, 앞의 글, 36면 등).

보범위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상거래보험에 대한 약간의 선행연구가 행해져 왔으나,<sup>5)</sup> 이에 대한 법적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보험이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책임위험의 담보라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보험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자상거래보험 약관에 대한 해석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 II. 전자상거래상 손해배상책임

### 1.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의의와 유형

#### 가. 전자상거래 사업자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를 포함한다. 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6호). 이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동시에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 공인전자보관소, 공인인증기관 등의 법적 지위에 설 수도 있다.

5) 이형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그 활용방안”, 경제법연구, 제4권 제1호, 2005, 199-217면; 신건훈, “전자상거래보험의 담보범위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27권 2005.08, 137-163면; 라공우·민태홍, “전자상거래 위험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제도를 중심으로 -”, 무역상무연구, 제27권, 2005.08, 101-129면; 김은기, “전자금융거래법 도입과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 Koreanre, 2006 spring, 2006, 20-23면; 조혜원, “개인정보유출 관련 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손해보험, 2006년 4월호, 2006.04, 44-53면; 홍진희, “개인정보침해와 책임보험”, 인터넷법률, 통권 제44호, 2008, 75-96면 등.

나. 현행법상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유형

(1)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통신판매중개자”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3호, 제4호 참조).<sup>6)</sup>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하고 있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3호). 주로 포털사이트, 게임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콘텐츠제공, 채팅, 인터넷뱅킹, 인터넷방송, 경매, 커뮤니티, 미니홈피, 블로그 등 일반적 인터넷 웹사이트와 P2P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sup>7)</sup>

(3)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거래법은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된 기관,<sup>8)</sup> ②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성전문금융회사,<sup>9)</sup> ③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④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sup>10)</sup> ⑤ 그 밖에

6) 주로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11번가 등과 같은 오픈마켓사업자들이 이에 해당한다(서울경제 2011.07.05).  
7) 부가통신역무의 자세한 설명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2011, 21면 참조.  
8) 2012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은행법상 인가받은 은행은 시중은행 7개(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한국씨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지방은행 6개(부산, 대구, 전북, 경남, 광주, 제주은행), HSEC 은행 서울지점 등 39개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총 53개를 말한다.  
9) 2011년 현재 여성전문금융업자 80개사(신용카드업(21사), 시설대여업자(27사), 할부금융업자(20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12사))(여성전문금융협회, 2011.12).  
10) 2011년 현재 새마을금고의 수 1448개(2011년 기준)(e-나라지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금융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기관을 제외한다)를 “전자금융업자”로 규정하고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4호).<sup>11)</sup>

#### (4)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라고 정하고 있다.<sup>12)</sup>

#### (5) 공인인증기관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공인인증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sup>13)</sup>

## 2.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통신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에 따르고, 다만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의 경우 대금환급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동법 제18조 제2항).

11) 2012년 현재 전자금융업체 62개 사이다(이데일리 2012.08.12).

12) 2012년 현재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LG CNS, 삼성 SDS, 한전 KDN, 하나아이앤에스, 유포스트,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총 8개 업체이다.

13) 2012년 현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총 5개이다.

그러나 동법은 사이버몰 운영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의 선정과 퇴출, 사이버몰 관리 등 사이버몰 운영을 사업으로 하여 그로부터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관이론이나 명의대여자책임 등의 관점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의무 및 민사상 손해배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동법 제20조, 제20조의2).<sup>14)</sup>

####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무규정을 두고(동법 제22조-제31조 참조),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러한 의무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2조). 예를 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유통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처리하여 해당 개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대법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인정하고,<sup>15)</sup> 온라인상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또는 불법적인 콘텐츠의 제공 등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고 있다.<sup>16)</sup>

#### 다.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sup>17)</sup>

14) 이경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 인터넷법률, 제37호, 2007.01, 96면.

15)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30호).

16) 대법원 2001.9.7. 선고 2001다36801판결; 대법원 2003.6.27. 선고 2002다72194판결 등.

17) 최근 우리나라에서 전자금융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의 증가와 함께 전자금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간 전자금융사고는 2006년 2건, 2007년 23건, 2008년 10건, 2009년 24건, 2010년 16건 등

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책임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보관 등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6 제1항 본문). 예를 들면 공인전자문서센터가 해커나 내부직원에게 의한 고객의 개인신상정보의 변조, 파괴, 유출, 오용, 도용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동조 동항 단서).

마. 공인인증기관의 책임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전자서명법 제26조 제1항). 예를 들면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나 해커나 내부직원에게 의한 고객의 개인신상정보의 변조, 파괴, 유출, 오용, 도용 등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이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동조 동항 단서).

3.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특징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의 사회적 상황과 손해배상책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 사업자 수의 증가이다. 예를 들면 온라인 전문 쇼핑몰 창업이 연평균 20%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sup>18)</sup>

둘째,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다수의 법률이 존재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들

이다. 2006년 1천500만원이었던 전자금융사고 피해액은 지난 2007년 3억3천150만원, 2008년 4억2천800만원으로 급상승하고 있다(연합뉴스 2011.04.17).

18) 2011년 한해 온라인 전문쇼핑몰 창업자는 총 12만6494명으로 전년에 비해 23.9% 늘었다(아시아경제 2012.01.16.). 이와 같이 통신판매업 신고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에서 구청으로 업무처리를 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 동시에 여러 법적 지위에 서게 된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는 쇼핑몰 운영사업자들은 다른 한편,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 인터넷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도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은 대부분이 자신들의 중복적인 지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나아가 전자상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하나의 전자상거래 사고발생시 다수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최근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따른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인 카드사에 이어 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기관”인 은행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공인인증서 재발급 과정에서 발급기관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sup>19)</sup>

넷째,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수가 많아 손해배상액이 커서 한번 분쟁에 휩싸이면 사업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다.

넷째,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입법방향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강화 및 사업자책임 가중으로 되면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민, 형사상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책임위험을 분산시킴과 동시에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사전에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이용가능성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4. 전통적인 책임보험에 의한 담보가능성

전자상거래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대다수의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상 손해배상책임이 전통적인 영업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이나 하자배상책임보험 등에 의해서 담보되는지 검토하고자 할 것이다.

19) 서울경제 2012.10.09.

그런데 우선, 보험업계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인 재물 손해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손해를 제외하고 있다.<sup>20)</sup> 또한 보험자들은 전자상거래 관련 위험을 배제하도록 재보험자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한 담보를 주저하고 있다.<sup>21)</sup> 그리고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인 임원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담보를 제공한다는 한계가 있다(국문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2조 제1항). 하자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전문적 서비스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담보하고, 미디어책임면책과 재물손해면책에 의해서 그 담보가 제한된다.<sup>22)</sup> 결국 전자상거래상 손해배상책임은 전통적인 보험에 의해서 담보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Ⅲ. 전자상거래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보험

#### 1. 서설

현행법상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대표적인 전자상거래보험으로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쇼핑몰보증보험,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 공인전자문서센터배상책임보험, 공인인증기관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보험의 약관들 중에서 아직까지 보험업계에서 주류를 이루거나 표준으로 이용되는 보험약관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보험 약관들은 일정한 공통적인 성격 및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보험의 법적 성격 및 주된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0) Robert Paul Norman, "Virtual Insurance : Is Your Old Policy From Invisibleinc. Com? If So, What Cyber Policy Adequately Covers Your Risks", 673 PLI/Lit 557, 2002, §2:29.

21) Lorelie S. Masters, "High-Tech Insurance Issues", Insurance Coverage 2007:Claim Trends & Litigation, 758 PLI/Lit 203, April-May, p. 217.

22) Lorelie S. Masters, op. cit., pp. 232-233.

## 2. 전자상거래보험의 법적 성격

## 가. 책임보험

책임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에 보험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상법 제719조). 전자상거래보험 중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 공인전자문서센터배상책임보험, 공인인증기관배상책임보험 등은 책임보험이다(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약관(이하에서는 “개인정보보험약관”이라고 한다.) 제6조,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 약관(이하에서는 “전자금융보험약관”이라고 한다.) 제6조).

책임보험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고,<sup>23)</sup> 전자상거래보험 중 책임보험도 그 특징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보험은 배상책임의 객체에 따라 대인배상책임보험과 대물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피보험자가 타인의 인적 손해, 즉 사망 또는 신체나 정신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으로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후자는 피보험자가 타인의 물건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이다.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 공인전자문서센터배상책임보험, 공인인증기관배상책임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에 따라서 개인책임보험, 영업책임보험, 직업인 책임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전자상거래보험은 영업책임보험에 해당하는데, 이는 피보험자의 영업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이다.<sup>24)</sup>

셋째, 책임보험은 보험금액한도액의 유무에 따라 유한배상책임보험과 무한배상책임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보험은 대부분이 유한배상책임보험으로서, 피해자 1인 또는 사고를 기준으로 보험자의 배상책임의 한도액이 정하여진 책임보험이다(전자상거래배상책임보험 약관 제9조 제1항).

23) 양승규, 『(제5판)보험법』, 삼지원, 2005, 350-352면 참조.

24) 양승규, 앞의 책, 351면.

넷째, 책임보험은 보험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임의책임보험과 강제책임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임의책임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는지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책임보험으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이에 해당한다. 강제책임보험은 피해자 보호라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것으로,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 공인전자문서센터배상책임보험, 공인인증기관배상책임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나. 보증보험

전자상거래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증보험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쇼핑몰보증보험이다. 원래 보증보험이란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sup>25)</sup> 쇼핑몰보증보험도 보험계약자인 인터넷 쇼핑몰개설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자가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상품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반품사유에 해당하여 반품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쇼핑몰 개설자가 상품대금을 환불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인 상품구매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보험이다.

한편, 쇼핑몰보증보험은 쇼핑몰 운영자인 보험계약자가 상품구매자인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므로 타인을 위한 보험에 속한다(상법 제639조). 그러나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에게 인적 또는 물적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에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에 관한 위험을 인수하여 그로부터 생기는 손해를 담보하도록 하는 일종의 손해담보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이는 점에서 자기를 위한 보험과 타인을 위한 보험의 융합형태라고 할 수도 있다.<sup>26)</sup>

25) 양승규, 앞의 책, 420면; 한기정,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에 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2002, 579-625면 참조.

26) 이형규, 앞의 글, 207면.

#### 다. 기업보험

기업보험은 기업인이 기업경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으로서,<sup>27)</sup> 기업보험의 거래에 있어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다 같이 기업인으로서 서로 대등한 지식과 재력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가계보험의 경우와 같이 특히 피보험자의 이익보호의 요청이 강하지 않다. 그리하여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제안된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결과가 되도록 객관성·통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상법 제663조 소정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sup>28)</sup>

전자상거래보험의 상당수는 기업보험에 해당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영세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인 경우에도 불이익변경 금지원칙배제를 일관되게 적용할 것인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 3. 전자상거래보험의 보상요건

#### 가. 피보험자의 업무관련행위

전자상거래보험은 영업책임보험으로서, 피보험자의 영업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그래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전, 현직 임원 등으로 국한되어 있고, 피보험자의 임원으로서 수행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개인정보보험약관 제5조, 전자금융보험약관 제5조 등).

예외적으로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의 직원부정행위 담보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의 직원(각각의 업무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한함)에 의한 접근

27) 양승규, 앞의 책, 36면.

28) 대법원 1996.12.20. 선고 96다23818 판결; 대법원 2000.11.14. 선고 99다52336 판결 참조.

매체의 위조, 변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직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기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동약관 제1조).

#### 나. 손해배상청구

##### (1) 배상청구기준

책임보험은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가에 따라 크게 손해배상청구를 발생시키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방식(**accident basis**, 사고발생기준)과 손해배상청구 그 자체를 보험사고로 하는 방식(**claims-made basis**, 배상청구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sup>29)</sup>

사고발생기준이란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면, 비록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에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청구를 하였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 한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지게 되는 기준이다. 사고발생기준에 의할 경우에 전자상거래 위험과 관련하여 복잡한 담보문제가 발생한다. 사고발생기준에 의한 경우 언제 개인정보침해나 전자금융사고 등이 발생하였는지 확정하기 어렵고, 보험사고가 발견될 때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험료를 받은 후 몇 년이 경과해서 보험금이 청구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어 위험산정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sup>30)</sup> 예를 들어 네트워크가 중단된 경우에 사고는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경우에 발생한 것인가, 네트워크가 폭주한 경우에 발생한 것인가, 아니면 그 중간에 발생한 것인가가 문제된다. 또한 피보험자들은 네트워크가 과실로 디자인되어 설치된 때로부터 완전히 중단되고 다시 설치될 때까지 지속적인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피보험자들이 컴퓨터 오작동이 발생한 때 유효한 보험과 오작동을 유발한 부주의한 프로그래밍이 발생한 경우에 유효한 보험 모두에

29)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592면.

30) VTN Consolidated, Inc. v. Northbrook Ins. Co., 92 Cal. App. 3d 888, 891(1979)(quoted in Western Erectors, Inc. v. International Surplus Lines Ins. Co., No. 3 Civ. C009215, Cal. App. 3d Dist. Aug. 7, 1992, request to have opinion published denied); Nations Union Fire Ins. Co. v. Baker & McKenzie, 997 F.2d 305, 306(7th Cir. 1993).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들은 복수의 보험에 대한 보험금청구를 주장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손해사고기준에 의할 경우 보험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확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sup>31)</sup> 이에 새로운 전자상거래보험의 대다수는 배상 청구기준을 선택하고 있다(개인정보보험약관 제7조, 전자금융보험약관 제7조).<sup>32)</sup> 즉, 개인정보침해나 전자금융사고 등이 발생할 때에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청구의 시점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 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 (2) 보험기간

### (가) 통상의 보험기간

전자상거래보험의 보험기간은 통상 1년이다. 그리고 배상청구기준을 채택하고 있어서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한다(개인정보보험약관 제7조 제2항, 전자금융보험약관 제7조 제3항).

### (나) 소급담보일자

전자상거래보험에서 배상청구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보험기간의 개시 일보다 훨씬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침해사고나 전자금융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할 우려가 있다.<sup>33)</sup>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보험기간의 개시 훨씬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한 배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역선택의 소지가 있어 소급담보일자를 정하고 있다(개인정보보험약관 제7조 제1항, 전자금융보험약관 제7조 제1항). 여기서 “소급담보일자(retroactive date)”는 담보되는 개인정보침해사고나 전자금융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최초일자인, 보험담보 개시시점이다. 소급일

31) Robert Paul Norman, *Internet Law and Practice*, Thomson/West, 2007, §2:47.

32) 미국의 여러 법원에서 배상청구기준의 정당성이 다투어졌지만, 법원들은 배상청구기준보험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해오고 있다(Zuckerman v. Nat'l Union Fire Ins. Co., 100 N.J. 304, 495 A.2d 395, 4001-01(1985); Providence Hosp. v. Rollins Burdick Hunter, 824 F. Supp. 131(N.D. Ill. 1993); AOK Lands, Inc. v. Shand, Morahan & Co., 860 P.2d 924(Utah 1993).

33) 물론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다만, 보험계약 당사자들이 모두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계약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상법 제644조).

자가 설정되어 있는 보험증권을 보험자를 달리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새로운 보험증권상 소급일자는 이전 보험증권상 소급일자와 같거나 그 이전 이어야만 위험담보의 빈틈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소급일자의 설정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설사 있더라도 그 일자를 멀리 소급하는 것이 좋다.<sup>34)</sup>

(다) 보고연장담보기간

전자상거래보험은 배상청구기준보험으로서,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곧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보고연장담보기간(**extended reporting period or discovery period**)은 이와 같은 보험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다른 보험자를 구하는 등 대처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피보험자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해지 후 일정기간 내에 제기되는 배상청구는 기존 보험자가 계속 담보하여 주겠다는 것이다.<sup>35)</sup>

보고연장담보기간에는 계약자의 의사표시여부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자동 보고연장담보(**Automatic Extended Reporting Period**)와 보험계약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선택보고연장담보(**Optional Extended Reporting Period**)로 구분된다(개인정보보험약관 제24조-제25조, 전자금융보험약관 제25조-제26조).<sup>36)</sup>

보고연장담보기간의 설정대상계약은 ① 보험료미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② 보험회사가 이 보험을 배상청구기준으로서 이 보험증권상의 소급담보일자 이후의 날짜를 소급담보일자로 하는 보험으로 갱신 또는 대체했을 경우, ③ 보험회사가 이 보험증권을 배상청구기준이 아닌 보험으로 대체했을 경우이다(개인정보보험약관 제22조, 전자금융보험약관 제23조).

34) 지수현, 『배상책임보험론』, 보험연수원, 1997, 69면.

35) *Stine v. Continental Cas. Co.*, 419 Mich. 89, 349 N.W.2d 127(1984).

36) 지수현, 앞의 책, 70면.

보고연장담보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는 보험기간 만료일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즉 보험기간 만료일 후 보고연장담보기간 중에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의 통지를 하면, 그 손해배상청구도 보험기간 만료일에 청구한 것으로 취급된다(개인정보보험약관 제23조 제1항, 전자금융보험약관 제24조 제1항). 물론 소급담보일자와 보험기간 만료일 사이에 행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한다(동조 동항 단서). 또한 보고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보상한도액이 복원 또는 증가되거나 보험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동조 제2항). 그리고 배상청구기준이 손해사고기준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sup>37)</sup> 여전히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통지하여야 한다.<sup>38)</sup>

### (3) 다수의 손해배상청구

개인정보침해나 전자금융사고 등 어느 하나의 사고에 대해 다수의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보험 약관은 “어느 하나의 행위에 대한 다수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중 최초로 제기된 날을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일자로 봅니다.”라고 정하고 있다(개인정보보험약관 제7조 제3항, 전자금융보험약관 제7조 제3항).

이 규정이 보험자와 피보험자에게 주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보험자의 입장에서 이 규정에 의하면 ‘어느 하나의 행위에 대해 다수의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모든 청구가 하나의 보험기간 안에 포함되고, 따라서 하나의 보상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보상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배상청구기준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인수하게 되는 잠재적인 무제한의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보험자의 위험을 제한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입장에서는 그가 행한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과거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장래의 손해배상청구가 이전의 보험에 의해서 담보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다른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sup>39)</sup>

37) *Federal Insurance co. v. CompUSA, Inc.*, 2003 WL 173960(5th Cir. Feb. 11, 2003) (보고연장담보기간이 존재한다고 해서 배상청구기준보험이 손해사고기준보험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38) *FDIC v. Booth*, 82 F.3d 670, 675(5th Cir. 1996)(보고연장담보기간특약은 보통보험의 통지조항을 포함하므로, 보험계약자는 보고연장담보기간동안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39) *Olson & Hatch*, *op. cit.*, §12:10.

#### (4) 손해배상청구의 통지

전자상거래보험이 배상청구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보험자는 손해배상 청구 통지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의 원인, 손해의 종류 및 범위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손해방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부과시킨 의무이다.<sup>40)</sup>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의 통지는 배상청구기준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이러한 통지가 없는 것은 담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험약관 제17조, 전자금융보험약관 제17조 등).

#### 다. 배상책임부담으로 입은 손해

전자상거래보험은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을 정하고 있다(개인정보보험약관 제6조, 전자금융보험약관 제6조 등). 즉 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부는 피보험자인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이 이용자에게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급부(손해보상급부)와 피보험자가 이용자에 대해 책임을 추궁당하는 경우의 소송비용이나 변호사보수 등의 방어비용을 보상하는 급부(방어비용급부)로 구성된다. 일반 배상책임보험과 다른 점은 손해보상급부와 방어비용급부를 합한 금액을 보상한도액 내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sup>41)</sup>

#### 라. 전자상거래보험의 담보지역

온라인 환경과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은 지역적 제한이나 국경의 개념이 없이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전자상거래보험 보험약관들은 손해배상청구가 발생한(arises) 곳에 담보를 제공하

40) 양승규, 앞의 책, 167면.

41) 신인식 외, 『특종보험이론 및 실무』, 보험연수원, 2004, 517면.

는 대신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brought) 지역으로 담보를 제한함으로써 담보의무를 한정하고자 한다(전자금융보험약관 제6조 제1호, 개인정보보험약관 제8조 제14호).<sup>42)</sup> 따라서 피보험자들은 약관의 관할법원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보험자의 약관은 “어디에서나” 적용되지만, 이것은 계류 중인 소송이 대한민국에 접수되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보험에서 담보지역이 아닌 곳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경우 담보를 배제하는 지역적 제한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sup>43)</sup>

#### 4. 전자상거래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

##### 가. 서설

우리나라에는 전자상거래보험의 내용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보험이 어떠한 내용적 한계를 가지는지를 해석론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담보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보험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면책사유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자상거래보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책사유는 다음과 같다.

##### 나. 위법행위면책

보험법상 일반원칙으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보상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sup>44)</sup> 이러한 취지에서 전자상거래보험의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 것은 범죄행위 면책, 법령위반면책, 사적이익면책 등이 있다.

첫째, 범죄행위면책으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범죄행위 또는 고의, 피

42) Jayson W. Sowers & Riddell Willians P.S., “Insurance Coverage for Cyberspace Liabilities”, 690 *PLI/Lit* 683, April, 2003, p. 713.

43) Jayson W. Sowers & Riddell Willians P.S., *op. cit.*, p. 710.

44) 이형규, 앞의 글, 210면.

보험자에 의한 비방, 중상모략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등은 보상하지 아니한다(개인정보보험약관 제8조 제1호 및 제3호, 전자금융보험약관 제8조 제1호, 쇼핑물보험약관 제8조 제1항 제1호).<sup>45)</sup> 범죄행위에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상 처벌규정에 따른 범죄가 포함될 것이다.

둘째, 법령위반면책으로, 피보험자의 중과실에 의한 법령위반, 법령에서 정한 자격, 면허,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않은 사이에 피보험자가 행한 행위 등으로 인한 배상청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개인정보보험약관 제8조 제2호, 제4호, 제5호). 그리고 특허권 침해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및 관련 하위법령을 위반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전자금융보험약관 제8조 제12호, 제13호, 제24호).

셋째, 사적인 이익면책으로, 기명피보험자 자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고 취득한 정보를 자기의 이익을 위한 사용으로 인한 배상청구도 보상하지 아니한다(개인정보보험약관 제8조 제9호).

#### 다. 타보험면책

전자상거래보험은 전자상거래로 인한 업무상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보험에서 담보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그러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보험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면책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타보험면책이라고 한다. 전자상거래보험에서 타보험면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새로운 보험상품들은 전통적인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차이를 두기 위해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해서는 담보를 배제한다. 신체·재물면책으로,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재물의 멸실, 훼손, 오손,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배상청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개인정보보험약관 제8조 제11호 및 제12호, 전자금융보험약관 제8조 제5호 및 제6호). 단, 재물손해의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에 의한 유체물의 직접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보상한다. 또한 전자적 데이터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에 별도로 정한 보상한도액 내에서의 데이터복

<sup>45)</sup> 약관의 용어정의에 따르면 벌금, 과료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비용에 한한다.

둘째, 제조물책임면책으로, 결함 있는 생산물 또는 완성작업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청구, 생산물의 성능 및 하자에 의한 생산물 또는 완성작업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전자금융보험약관 제8조 제20호 및 제22호).

셋째, 보험개시일 이전행위 등 면책으로, 이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을 경우 및 그 상황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개인정보보험약관 제8조 제13호, 전자금융보험약관 제8조 제10호).

넷째, 환경오염면책으로,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오염제거비, 석면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및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아니한다(전자금융보험약관 제8조 제15호, 제18호, 제19호, 개인정보보험약관 제8조 제30호).

#### 라. 원고면책

전자상거래보험에서 원고면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피보험자간면책으로, 원고가 다른 피보험자, 회사 등인 경우에는 통모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한 원고에 의해서 제기된 소송에 대한 담보를 배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피보험자에게 ① 다른 피보험자, ② 피보험자를 대리하거나 피보험자가 직, 간접적으로 소유, 관리 또는 운영하는 사업체에 의하여 제기된 배상청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용자 등에 의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도 보상하지 아니한다(전자금융보험약관 제8조 제7호, 개인정보보험약관 제8조 제20호).

둘째, 주주대표소송면책으로, 주주대표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개인정보보험약관 제8조 제24호).

셋째, 정부관련기관면책으로, 국가무역관련기관 또는 국가통신관련기관 및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기하는 배상청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단, 그러한 기관이 피보험자의 이용자로서 제기하는 배상청구는 보상한다(전자금융보험약관 제8조 제8호).

마. 전쟁행위 등 면책

전쟁 그 밖의 변란은 위험산정의 기초로 된 통상의 사고가 아니고, 그 통상의 보험료로써는 그 위험을 인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법 제660조를 구체화한 것이기도 하다.

첫째, 전쟁행위면책으로, 원인의 직, 간접을 불문하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노동쟁의 또는 정치적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개인정보보험약관 제8조 제29호, 전자금융보험약관 제8조 제2호).

둘째, 천재지변면책으로, 원인의 직, 간접을 불문하고,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전자금융보험약관 제8조 제3호, 소평물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셋째, 전자파, 전자장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전력공급중단, 정전, 전압·전류 불안정에 의하여 인터넷을 지원 또는 구성하는 통신선, 데이터 전송선 또는 여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위성의 장애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등은 보상하지 아니한다(전자금융보험약관 제8조 제11호 및 제17호, 개인정보보험약관 제8조 제31호).

## 5. 각 전자상거래보험별 특성 및 활용현황

### 가.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 (1) 의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이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인 피보험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의 관리 또는 관리의 위탁에 수반하여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에 기인해서 보험기간 중에 가입자 또는 그 임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가입자 또는 그 임원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예를 들면, ①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② 정송비용, ③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인이 입은 손해) 구상권보전비용 등이 보상될 것이다.<sup>46)</sup>

#### (2) 특성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에게 사용이 허락되지 않은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 접근, 부당한 코드 삽입 등으로 인한 책임은 담보하지 않는다. 이 면책은 기업스파이나 내부자에 대한 담보를 효과적으로 배제한다.<sup>47)</sup>

#### (3) 활용현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기되는 손해배상책임은 정보통신망법위반, 즉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것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업무를 수행하는 중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책임위험을 상당부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다른 법률과 달리 정보통신망법은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sup>48)</sup> 그리고 사업자들의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인식부족, 높은 보험료

46) 그 외에도 위기관리컨설팅비용과 위기관리실행비용을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다(AIG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참조).

47) Jayson W. Sowers & Riddell Willians P.S., *op. cit.*, pp. 716-717.

48) 다만,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6조 제2항).

와 안정적인 손해율, 보험회사들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부족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험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다.<sup>49)</sup>

#### 나. 쇼핑물보증보험

##### (1) 의의

쇼핑물보증보험이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결제한 후 상품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반품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상품대금을 환급받지 못하여 피해를 당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이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sup>50)</sup>

쇼핑물보증보험계약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보상이나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 확보에 적합한 수준이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4조 제5항). 쇼핑물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은 당해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의 구매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 입은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상품대금 이내에서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쇼핑물보험약관 제5조).

##### (2) 특성

###### (가) 보험계약 당사자

쇼핑물 보증보험은 계약당사자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이외에 쇼핑물에서

49) 삼성화재는 '개인정보누출 배상책임보험'과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에 특약형태로 가입이 가능한데 2010년 가입건수는 19건에 불과하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는 LIG손해보험과 현대해상도 각각 7건, 8건의 실적을 올리는데 그쳤다. 한화손해보험 역시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과 'e-biz배상책임보험'을 내놓았지만 가입건수 23건에 불과하다. 그린손해보험도 가입건수는 3건이다 (파이낸셜뉴스 2011.04.11).

50) 이형규, 앞의 글, 203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보험자가 된다(약관 제6조 제1항).

(나) 보험사고

쇼핑몰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는 인터넷상의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그 대금을 결제한 후 상품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반품사유에 해당함에도 결제대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이다(약관 제7조). 통상의 손해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로 인정되려면 우연성을 갖추어야 하지만, 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원인인 채무불이행이 반드시 우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보험기간 및 보험금액

쇼핑몰 보증보험에서 보험기간은 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는 기간으로서, 보험계약체결일에 시작하여 피보험자가 상품구매의사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주계약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보험금액은 상품결제대금으로 한다(약관 제9조 참조).

(라) 보험자의 면책사유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중과실 면책이 인정되지만(상법 제659조 제1항), 보증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의 고의, 중과실을 면책사유로 한다면, 보증보험은 그 실효성을 잃는다. 따라서 보증보험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쇼핑몰보험약관에서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라고 규정하여(약관 제12조 제1항),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제재와 함께 보험계약의 선의성도 확보하고 있다.<sup>51)</sup>

51) 이형규, 앞의 글, 209면.

### (3) 활용현황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물건판매의 이행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이 ‘전자상거래(쇼핑몰)보증보험’ 상품을 2000년부터 판매하고 있다.<sup>52)</sup> 포털사이트에서 입점의 조건으로 쇼핑몰보증보험의 가입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는 대부분이 포털사이트에 입점해 있는 중소형 쇼핑몰, 소호 쇼핑몰이다. 한편 대형쇼핑몰들이 쇼핑몰보증보험에 거의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이들은 이미 고객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보험가입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sup>53)</sup>

## 다.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

### (1) 의의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이란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전자금융거래, 전자지급거래업무와 관련하여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LIG 전자금융보험약관 제6조 제1항 참조).

### (2) 특성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은 주된 전자금융사고인 접근매체의 분실 및 도난으로 인한 사고,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사고 등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다(약관 제8조 제14호, 제23호 등).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보험보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접근매체부정발급담보 특별약관,<sup>54)</sup>

52) 2008년 기준 쇼핑몰보증보험에 가입한 건수는 716,962건이다(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2010, 158면).

53) 이형규, 앞의 글, 211면.

54) 접근매체부정발급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종사자가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 또는 전자지급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발급, 교부하는 과정에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sup>55)</sup> E-Biz 위험 추가담보 특별약관<sup>56)</sup> 등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3) 활용현황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 변조 및 분실, 도난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4항). 그러나 전자금융업자들의 전자금융 사고에 대한 인식부족, 높은 보험료와 안정적인 손해율, 보험회사들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부족 등으로 전자금융업자들의 보험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라. 공인전자문서센터배상책임보험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에서는 “전자문서법”이라고 한다.)상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전자문서법 제31조의16 제2항).<sup>57)</sup> 현재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sup>58)</sup>

---

서 정당한 이용자로 오인하여 발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55)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로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56) E-Biz 위험추가담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부작위를 포함)에 기인하여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57)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지정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간 보상한도액이 20억원 이상인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5조의11 제1항).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른 보상한도의 잔여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잔여 보상한도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58) 구체적으로는 한국정보인증의 경우 e-biz 손해보험(인증서비스보험)에 가입하였고, 사고 건당 5억원, 연간 10억원의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증권전산의 경우에도 e-biz 보험에 가입하였고, 1년 단위로 연 2억원 최대 25억원의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결제원의 경우 연간 20억 한도로 부보하였다. 한국전산원의 경우 5억원을 배상한도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완용, 『(제3판) 전자상거래법』, 법영사, 2009, 57면).

마. 공인인증기관배상책임보험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전자서명법 제26조 제2항).<sup>59)</sup> 현재 공인인증기관들은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 IV. 맺음말

전자상거래상 손해배상책임 분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후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보험제도의 활용은 불가피하다.<sup>60)</sup> 특히 적은 보험료로 고액의 손해배상책임과 소송비용을 해결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적극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뒷받침하게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에 대한 보험보호는 국가경제의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다수의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은 인터넷 또는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사업기회 및 성장기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뿐, 인터넷의 활용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새롭고 강력한 책임위험과 그 위험에 대한 제도적 관리수단인 보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sup>61)</sup> 이에 다음과 같이 전자상거래보험에 대한 인식재고 및 활용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책임위험분산 및 책임이행을 확보하여 전자상거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보험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59) 실무상으로는 공인인증업무준칙에도 공인인증기관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09-47호, 2009.8.25).

60) 최근 방송사와 금융사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계기로 해킹이나 신종 피싱 등 각종 사이버범죄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한 보험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한국보험신문 2013.03.24).

61) 그 원인으로는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 관련 사고 발생 시에 배상금 지급사태가 드물었다는 점, 그리고 배상을 받기 위해 소비자가 피해여부를 입증해야한다는 점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사실과 보험내용 등을 공시하고 조회할 수 있는 공시조회 시스템을 마련하여 비가입자와 차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sup>62)</sup>

둘째, 보험업계는 전자상거래 종합보험이라는 포괄담보형태의 보험을 개발하거나 특별약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보험은 보험별로 그 보험사고 및 보상하는 내용이 다르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은 중복적인 법적 지위로 인하여 다양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어,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보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보험사고별로 개별적인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험업계에서도 포괄담보형태의 전자상거래 종합보험을 개발하거나, 특별약관으로 가입대상, 보장범위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sup>63)</sup>

셋째,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빈번하게 전자상거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보험의 성장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험료와 안정적 손해율 등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의 가입실적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보험제도를 단체보험형태로 운영할 경우 저렴한 보험료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sup>64)</sup> 참고로, 다양한 사업자가 있고 책임의 범위 등이 다양한 경우에는 충분한 보상보다는 최소한의 보상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의 제도로 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전자상거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보험 약관에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보험은 상

62) 참고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보험계약 성립 후 재화 등의 구매자가 지체없이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 및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의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동조 제8항).

63) 다만, 전자상거래 관련 사고에 대한 양질의 제리 데이터가 부족하고 손실에 대한 계량화의 어렵다는 점과 인터넷으로 광범위하게 연결된 광범위한 리스크의 지역적 분산이 어렵다는 장애요인들도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변혜원, "사이버보험으로 사이버리스크 대비해야", 서울파이낸스 2012.02.17.). 또한 일반전자상거래와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위험은 다르고, 그 1사고당 또는 총 보상 한도액 등이 다를 수 있고, 위험률에 차이가 있어 전자상거래 종합보험으로 포괄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있다.

64) 조혜원, 앞의 글, 57면 참조.

당수가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보험 국문 약관에서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논의의 출발점이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법적 보호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약관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의한 전자상거래보험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은 전자상거래 사고로 인한 소송 및 배상책임으로부터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실질적인 이행으로 소비자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건전한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 2013. 03. 29.	심사일 : 2013. 04. 22.	게재확정일 : 2013. 04. 30.
---------------------	---------------------	-----------------------

## 참고문헌

-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 신인식 외 4인, 『특종보험 이론 및 실무』, 보험연수원, 2004.
- 양승규, 『(제5판) 보험법』, 삼지원, 2005.
- 양승규·장덕조, 『보험법의 쟁점』, 법문사, 2000.
- 지수현, 『배상책임보험론』, 보험연수원, 1997.
- 정완용, 『(제3판) 전자상거래법』, 법영사, 2009.
-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2010.
- 고형석,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3항과 제20조 제2항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법조, 통권 제641호, 2010.02.
- 곽영암, “전자상거래보험 활성화 방안”, 전자상거래학회지, 제8권 제2호, 2007.
- 김선정, “지적재산권분쟁의 급증에 따른 보험제도의 활용과 법적 과제”, 보험학회지, 제61집, 2002.04.
- 김은기, “전자금융거래법 도입과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 Koreanre, 2006 spring, 2006.
- 라공우·민태홍, “전자상거래 위험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제도를 중심으로 -”, 무역상무연구 제27권, 2005.08.
- 신건훈, “전자상거래보험의 담보범위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27권, 2005.08.
- 이경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 인터넷법률, 제37호, 2007.01.
- 이형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그 활용방안”, 경 제법연구, 제4권 제1호, 2005.
- 장경환, “교통범칙금대행업과 보험법”, 보험학회지, 제54집, 1999.12.
- 조혜원, “개인정보유출 관련 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손해보험, 2006년 4월호, 2006.04.
- 주지홍·김선정·이철남·양인애, “소프트웨어 거래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 03-04, 2003.12.

한기정,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에 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2002.

홍진희, “개인정보침해와 책임보험”, *인터넷법률*, 통권 제44호, 2008.

Jayson W. Sowers & Riddell Willians P.S., “Insurance Coverage for Cyberspace Liabilities”, 690 *PLI/Lit* 683, April, 2003.

Lorelie S. Masters, “High-Tech Insurance Issues”, *Insurance Coverage 2007: Claim Trends & Litigation*, 758 *PLI/Lit* 203, April-May, 2007.

Matthew J. Schlesinger & Jason M. Silverman, “Insuring Privacy : Is Your Company Covered?” 37 *Tort & Ins. L. J.* 1101, 2002.

Robert Paul Norman, *Internet Law and Practice*, Thomson/West, 2007.

Robert Paul Norman, “Virtual Insurance : Is Your Old Policy From Invisible inc. Com? If So, What Cyber Policy Adequately Covers Your Risks”, 673 *PLI/Lit* 557, 2002.

<국문요약>

## 전자상거래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의 활용과 법적 과제

홍진희

최근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각종 전자상거래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문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률들은 소비자보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업자 책임강화라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와 같은 자신의 법적 지위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위험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장치와 더불어 제도적인 장치로서 보험제도의 활용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전자상거래보험제도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책임위험분산 및 책임이행을 확보하여 전자상거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보험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험업계는 전자상거래 종합보험이라는 포괄담보형태의 보험을 개발하거나 특별약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상거래보험의 보통약관은 표준화시키고, 특별약관은 보장내용, 보장범위 및 면책사유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전자상거래 보험제도를 단체보험형태로 운영하는 등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자상거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는 전자상거래보험 약관에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보험, 사이버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 쇼핑몰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Abstract>

## **Legal Issues of Insurance on Liability from Electronic Commerce**

Hong, Jin-Hee

In recent years, various E-Commerce related accidents are occurring frequently due to the increase of E-Commerce in Korea. Consumer's damage caused by these has become a serious problem. Laws relating to E-Commerce has been revised to the strengthen responsibility of E-Commerce merchants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se situations, the E-Commerce merchants need to be aware of their legal status and their liability. They should seek to take advantage of the insurance as the Institutional mechanisms. In this study, the following are presented as a way to demonstrate the original features of the E-Commerce Insurance system.

First, there is a need to actively induced for e-commerce operators to join the e-commerce insurance. If E-Commerce merchants could take up a E-Commerce Insurance, it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like to improve the company's image and promotional effects ect.

Second, there are the need to develop E-Commerce Insurance blanket policy, because the E-Commerce merchants are held different responsib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several law. In my opinion, there is a need to general policy of E-Commerce insurance to standardization, and

the institute replacement clause to diversify the coverage and indemnity and so on.

Third, the growth potential of E-Commerce Insurance is likely to sufficient due to the increase of E-Commerce-related accidents. Nevertheless, only some E-Commerce merchants has E-Commerce Policy due to the high premiums and stable insurance loss ratio. There is a need to come up with ways that they can benefit from affordable premiums such as group insurance.

Accordingly, the active use of insurance E-Commerce could be possible, we can protect E-Commerce' consumer and E-Commerce merchants from the litigation and liability resulting from the accidents associated with the E-Commerce, will ultimately be able to build a sound credit society.

Key Words: E-Commerce, E-Commerce Insurance, Cyber Insuranc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surance, Electronic Financial Liability Insurance, Shopping Mall Insurance,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ies Shopping Mall